이 보도자료는 6. 19.(일) 09: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지방검찰청

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우남준

전화 053-740-4352 / 팩스 0502-193-5504

보도자료 2022. 6. 19.(일)

제목

가출 대학생에게 비인간적인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폭력 사범 4명 기소

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

- ☑ 피고인, 죄명, 공소시실 요지, 공소제기 일시, 공소제기 방식, 수시경위, 수시상황 등 (제11조 제1항) ☑ 관련시건을 공소제기하면서 수시결과를 발표하는 경우의 불기소 시건(제10조 제1항 제3호) ☑ 피의자, 처분일시, 죄명, 처분주문, 수사경위, 수사상황 등(제10조 제2항)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보완수사하여, 피고인 등 5명이 가출한 대학생을 상대로 담배꽁초를 먹이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히거나 밀대 자루로 수십 회 때리는 등 집단 폭력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를 확인해 5. 27.(금) 주범 2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한 후 6. 14.(화) 4명을 기소(구속 2명, 불구속 2명) 하고, 1명에 대하여는 기소중지 결정하였음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및 주요 죄명

순번	피고인	주요 죄명	처분
1	A○○ (20세, 무직)	특수상해,	구속 기소
2	B○○ (20세, 자영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공동강요, 공동감금, 공동폭행) 등	구국 기포
3	C〇〇 (21세, 무직)		불구속 기소 ※ 이미 별건으로 구속되었음
4	D○○ (20세, 대학생)	폭행	불구속 기소

- ※ 피고인들은 SNS를 통해 **피해자** F○○(20세, 대학생)와 친분을 쌓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에서 대구로 가출하도록 유도
- ※ 공범인 피의자 E○○(20세, 무직)의 특수상해 등은 같은 날 기소중지

● 주요 공소사실 요지

순번	피고인	주요 공소사실 요지
1	AOO	- '21. 7.경 두 차례에 걸쳐 스테인리스 밀대 자루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십 회 때림 [특수상해,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상해)]
	ВОО	- '21. 7.경 피해자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저수지에 빠뜨린 후 저수지를
2		가로질러 헤엄치게 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강요, 공동폭행)]
		- '21. 8.경 성냥불로 피해자의 음모를 불태우고, 피해자로 하여금
3	C OO	자위행위를 하게 함 [폭력행위처벌법위반(공동폭행, 공동강요)]
		- '21. 8.경 담뱃불로 피해자의 온몸에 화상을 입힘 [특수상해]
4	DOO	- '21. 7.경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림 [폭행]

Ⅱ 주요 수사 경과

● '21. 8. 피해자 부친 112 신고로 수사 개시

● '22. 3.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 받음

● '22. 4.~5. 관련 사건 이송 및 병합 수사

※ 범죄의 중대성 및 집중 수사 필요성 확인하여 타 검찰청으로부터 E○○의 특수공갈미수 등 사건을 이송 받아 병합 수사

● '22. 5. 27. 대구지법, A○○, B○○ 각 구속영장 발부

● '22. 6. 14. 대구지검, A○○, B○○ 각 구속 기소 등 사건 처분

Ⅲ 수사 결과

-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가출을 유도**한 후 함께 생활하면서 사기 대출 범행을 계획하던 중 내성적인 피해자가 **어리숙하게 행동하는 등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과 가혹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됨
- 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검토하던 중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타 검찰청으로부터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집중 수사에 착수함

- 피고인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출석을 회피하는 피해자를 설득하여 신뢰관계인 동석 하에 신빙성 있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들을 5회 조사하는 등 전면 보완수사를 실시한 결과, 사건의 실체를 명확하게 밝혀 주범 2명을 구속하였음
-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해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워비**를 지원함

IV

향후 계획

- 향후 재판 절차에서 중인보호절차*를 통해 피해자가 법정에서 사실대로 진술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예정
 - * 증인 법정 동행,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퇴정 조치 등
- 검찰은 앞으로도 집단 폭력범죄에 엄정 대처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정성스러운 사건 처리로 국민들께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맡겨 주신 검찰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음

검찰은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신속히 일상을 회복하도록 △ 치료비, △ 긴급 생계비, △ 주거 이전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범죄 피해를 당하신 경우 범죄피해자 지원콜(1577-2584), 대구지검 원스톱(One-Stop) 범죄피해자 지원센터(053-740-4450)에서 상담·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